

【2026 대교뉴이프 재가복지센터 대구수성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 ① 본 센터 수급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 ② 이용대상은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수급자로 정 한다.

- 1. 장기요양인정 1 ~ 4등급 수급자
- 2. 5등급 수급자, 단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방문요양과정 프로그램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 및 방문요양과정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말한다)에 의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만 제공

◆ 희망을 원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대교뉴이프 재가복지센터 대구수성센터 053)753-8994, 팩스 0503)753-8995

☎ 시설장 이규혁: 010-2995-8994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대교뉴이프 재가복지센터 대구수성센터 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방문요양급여는 다음과 같다

-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 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머리 감기 도움, 몸 씻기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증진 도움
- 2.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 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 3. 인지관리 지원 - 인지행동변화 관리 등
- 4. 정서 지원 -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 5.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 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 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시 계약기간

-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②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④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이용료

-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 시설급여는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본인 부담금	일반(15%)	376,930	349,680	229,230	211,450	181,330
	감경(9%)	226,160	137,530	137,530	126,870	108,800
	감경(6%)	150,770	139,870	91,690	84,580	72,530

■ 이용료의 납입 절차

- ① 수급자나 보호자는 이용료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카톡 알림, 전자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한다.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용인
3.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기관과 수급자(신원인수인)은 다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① 기관(요양보호사)의 의무

1. 수급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3. 기관이 정한 급여제공지침에 따른 성실제공 의무
4.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내역(급여제공기록지)을 통보할 의무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본인 일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2. 가정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수급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요양보호사 업무기준 이외 과도한 요구 금지의무
5.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규칙 이행의 의무

③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
3.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4. 장기요양급여가 보장되며 그 급여에 대한 알 권리
5. 요양보호사 등 기관 종사자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7.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8.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공개의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퇴원 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2. 수급자에 대한 요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수급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 ①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급여 제공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수급자나 보호자는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급여 제공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계약의 해제

-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급여 외 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 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